

#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연구원

2013. 5. 16(목)

##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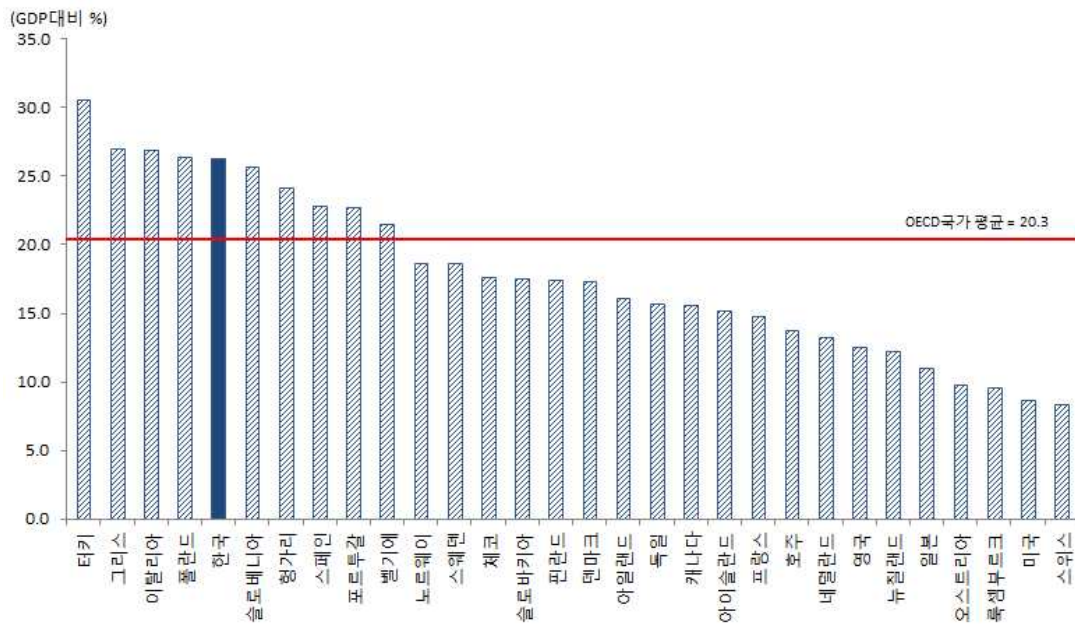
### 요 약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임
  - OECD는 2002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협약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기존 조세정보교환협약의 한계로 최근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Schneider 외(2012)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3% 수준([그림] 참조)
  -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탈세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등 지하경제 규모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최근에는 역외탈세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과표양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국가별 주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 스페인은 과세당국의 징수능력 강화 및 현금거래 한도 제한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그리스는 세무당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영수증발행의무화 정책을 추진
  - 미국은 해외 금융기관과 개인의 역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정책 및 국세청과

FinCEN 간의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 **일본**은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보유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국외재산조서제도를 시행
- **영국**은 스위스와 은행계좌 정보 제공 동의협약,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전략 대응방안 마련 등 역외탈세 대책을 시행
- **호주**는 2002년부터 매년 납세순응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발표하여 납세에 대한 정보 전달과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현금거래 파악을 위한 벤치마크 제도를 시행

**[그림] OECD국가의 지하경제 규모(1999~2010년 평균)**



자료: Friedrich Schneider 외,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2012.10)

## I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 대응

###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조세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

- 국제적 자금이동의 용이성이 증가됨에 따라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대책마련에 국가간 협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방안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대응방안
  
- 다국적 기업과 개인의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OECD 주도하에 조세정보교류를 강화<sup>1)</sup>
  - OECD는 2002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교류를 위한 협정을 주도
    - 특히 2008년 UBS 사태<sup>2)</sup> 이후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회담에서 은행들의 비밀주의 영업에 대한 반대 성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후 조세정보교환협약(TIEA) 가입국이 증가
  - 2009년 OECD는 조세정보교환협약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보조하는 Steering Group, Peer Review Group을 창설
    - 각 국가들의 조세조약의 체결 수, 국내법의 실제 집행능력 등 실제 조세조약 집행 능력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2010~2013년 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기존 조세정보교환협약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인하여 자동정보교환협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sup>3)</sup>
  - 자동정보교환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상대국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정보교환협정은 개별 국가의 국내법과 충돌하여 도입에 대해 논의 중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계좌 관련 정보를 자동 공유하는 것으로 합의<sup>4)</sup>

1) OECD (oecd.org)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2011. 12)

2) 2008년 UBS 직원이 탈세혐의로 체포되었고, 조사 결과 회사 차원의 대규모 탈세가 확인됨에 따라 IRS는 UBS에 행정적 소환 요청 및 스위스 계좌를 개설한 미국인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결국 스위스 정부와의 협상 끝에 스위스로부터 배상금과 일부 고객 명단을 확보한 사건

3)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동향과 미국의 FATCA」 (2011. 10)

## 4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 금융정보 자동 교환은 미국의 FATCA와 연계하여 그 자동정보교류의 폭을 늘리기 위한 노력 강화

- 최근 OECD는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새로운 논의(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BEPS)에 착수함<sup>5)</sup>
  - 조세피난처 세제 디자인에 대한 권고안, 이자비용 공제를 통한 세제 잠식 대응 권고안 마련 등 총 14개의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2013년 6월에 발표할 예정

### II

## 국가별 동향

### 1. 스페인

#### 가. “세금포탈 및 지하경제 근절을 위한 계획(Plan de lucha contra el fraude fiscal y la econom í asumergida)”<sup>6)</sup>(2012. 1. 5)

- (배경)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세금포탈 및 지하경제 근절을 위한 “2012 조세관리 계획안(Plan General de Control Tributario para 2012)”을 발표
  - 동 정책은 '12. 10. 31에 발효(현금거래 한도 제한정책은 '12. 11. 19 발효)
- (주요 내용) “2012 조세관리 계획안”은 크게 ① 조세포탈에 대한 조사 강화, ② 징수단계에서의 탈세 감시 강화 ③ 각 주정부의 과세당국과 업무 연계 강화를 주 골자로 하며 6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sup>7)</sup>

4) 국제금융센터, 「유럽 은행들의 비밀주의 영업관행 변화와 최근 ICIJ의 조세피난처 비밀계좌 폭로와 국내 파장」, 『국제금융 이슈』, 22권 17호 (2013. 4)

5)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1315&seqno=990415>)

6) The Ministry of the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El Gobierno firmemente comprometido en la lucha contra el fraude fiscal” (2012. 1. 5)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2/CONSEJO%20DE%20MINISTR OS/05-01-12%20Plan%20lucha%20fraude%20fiscal.pdf>)

7) The Ministry of the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The most ambitious anti-fraud law in the history of democratic Spain comes into force” (2012. 10. 30) 및 “The cash payment limit of 2,500 euros has come into force” (2012. 11. 18) 참고

## ○ 현금거래 한도 제한

- 개인사업자(business owner)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현금거래 한도를 2,500유로 이하로 제한하며 신용기관을 통한 거래(카드, 계좌이체 등)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관광산업 연계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 개인 납세자(individual non-resident)의 경우에는 현금거래 한도를 15,000유로로 제한
- 현금거래 참여자는 거래발생일로부터 5년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료 제공
  - 위반 적발 시 현금거래 규모의 25%의 벌금(fine)이 부과
  - 단, 거래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로 과세당국에 자진신고할 시 벌금 면제

## ○ 자산정보 제공 의무화

- 납세자들은 모든 종류의 주식, 자산, 은행계좌, 증권 및 생명보험,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
-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누락 건당 5,000유로 및 최소 1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 부과

##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산정방식 개정

- (현행) 직전연도 매출액(net volume of turnover)이 60만유로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personal income tax on business profits)는 간소화된 세액산정방식(simplified direct estimate system)에 의거하여 산정됨
  - 실제수익이 아닌 업종별로 재무부가 정하는 추정수익(estimated profit)에 근거하여 세금을 계산
- (개정) 매출액이 5만유로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개인(private individuals)과의 거래가 50% 이하일 경우 동 방식에서 배제
  - 이는 건축업, 배관공사, 목공업, 화물수송업 등의 직업군에 해당
  - 농·축산업 및 운송업, 이사서비스업 등의 직업군의 개인사업자는 연간 30만유로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단, 타 사업자로부터 연간 매출액이 22.5만유로 이상일 경우는 단순화된 세액산정방식 적용

## ○ 과세당국의 징수능력 강화

## 6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 납세자가 인위적으로 체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절차에서 세금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의 가능성을 제거
- 자산 없이 정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영자 중 반복하여 무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체납분을 납부하거나 근로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 부가가치세 포탈(VAT fraud) 최소화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잠재적으로 이중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신청 이전에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파산신청 이후에 공제받을 수 없음

### ○ 금융기관의 압수제도 수정

- 자본금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금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산 압수제도 수정
- 또한 세무조사를 불복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소 1,000유로에서 최대 60만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 (정책효과) 2012년도 세입 중 과세당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의 결과로 인한 규모는 약 115억 2천유로로 전년 대비 10.1% 증가<sup>8)</sup>

### <표 1>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으로 인한 세입 징수 실적 결과

(단위: 백만유로, %)

	2011	2012	차이	증가율	목표대비
탈세감시활동 강화로 인한 세입	9,239.66	10,400.95	1,161.29	12.57%	127.28%
- 징수단계 감시활동 결과	7,544.63	8,821.48	1,276.85	16.92%	132.79%
- 조세환급 감소 결과	1,695.04	1,579.48	-115.56	-6.82%	103.34%
정책도입의 결과(자진신고)	1,223.33	1,116.33	-107.00	-8.75%	
<b>합계</b>	<b>10,462.99</b>	<b>11,517.28</b>	<b>1,054.29</b>	<b>10.08%</b>	

자료: 스페인 국세청, "Spanish Tax Office revenue from anti-fraud measures increases by 10.1% in 2012 to 11.52 billion euros," 2013. 3. 11

8) The Ministry of the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La recaudación de la Agencia Tributariapor la lucha contra el fraude crece un 10,1% en 2012 hasta los 11.517 millones" (2013.3.11) 참고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3/S.E.%20HACIENDA/11-03-13%20lucha%20contra%20el%20fraude%202012.pdf>)

## 2. 그리스

### 가. 탈세 방지를 위한 국가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Tax Evasion)<sup>9)</sup>(2011. 5. 2)

- (배경)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자 탈세 처벌 강화 규정 마련
  - 동 계획은 모든 관련 공공기관과 예상징수액의 구체적인 이행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1~2013년도 동안 약 120억유로의 추가 세입 확보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탈세가 용이한 현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고자 주요 4가지 정책을 시행
  - 과세당국 운영의 현대화
    - 해외 선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구조 재개편
    - 공표된 지표로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국내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재구성
    - 관세청에 현대적인 정보기술 및 정보관리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교차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조사관들의 평가기준 설정과 직원 고용 등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밀반입 방지
  - 고액탈세에 대한 식별 및 처벌
    - 그리스 시민의 해외 예금계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유관기관과의 광범위한 협조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추적조사 강화
  - 징수의 효율성 제고
    - 납세순응 노력 및 모니터링, 집행 등 징수와 관련된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무부 내로 모든 통합 책임과 필요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세 징수를 가속화
    - 고액채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입법개정안 통과
    - 과세당국과 사회보장금 징수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과의 관련 정보 공유가 용이하도록 추진

9) Hellenic Republic Ministry of Finance, "Presentation of Greece's Nat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Tax Evasion" (2011. 5. 2)

(<http://www.minfin.gr/portal/en/resource/contentObject/id/55f30e3e-db84-42c6-bccb-920def8a1644>)

## 8 지아경제양성과 정책 해외동향

- 자발적으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 촉구
  - 동 계획은 자발적으로 납세순응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 친화적인 몇 가지 조치들을 포함
  - 전자신고서와 같은 자동 절차 등으로 납세순응비용을 줄이고 세법이 간소화되며 시민 대상으로 조세자문서비스(Tax advisory services) 이용을 장려하여 납세의식 제고

### 나. 영수증발급의무화 규정 도입(No Receipt, No Pay)<sup>10)</sup>(2012. 12)

- (주요 내용) 그리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발급의무화 규정 도입
  -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규정이 2013년 1월 13일부터 발효
  - 또한 사업장은 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1,000유로의 벌금(fine) 부과

## 3. 미국

### 가. 해외계좌 납세 순응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sup>11)</sup>(2013. 1)

- (배경) 투자의 글로벌화로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고, 보다 효과적인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기관 내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
- (주요 내용) 해외 금융기관(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은 IRS(미 국세청)와 정보제공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판별하여 보고
  - 동 협약을 맺은 해외 금융기관은 5만달러 이상의 예치금 및 25만달러 이상의 저축성보험·연금보험에 대해 전자검색을 하여 미국 납세자인지를 판별하고, 잔액이 100만달러 이상의 개인계좌에 대해서는 서면검색도 실시
    - 예금주의 동의하에, 예금주, 예금주 주소, 잔고 등을 IRS에 보고할 의무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계좌를 기존계좌로 간주하고, 2013년(1

10)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4789304578089082754150940.html>

11) Internal Revenue Service, "TD 9610(FATCA Final Regulation"(2013. 1)

역년 기준)과 2014년 정보에 대해서 2015년 3월 31일까지 보고

- 금융기관이 FTACA에 요구되는 정보를 직접 IRS에 보고할 때, 해외법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유럽연합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과 정부간 협정(IGA)을 체결
  - 동 협정은 금융기관이 FATCA가 규정하는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는 내용, 금융기관이 IRS가 아닌 자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

- (처벌)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계좌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계좌 보유자들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30%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금, 임대소득, 임금, 보험료, 연금 등과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인한 자산의 매각이나 기타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을 의미

#### 나. 1차, 2차, 3차 역외계좌 미신고 소득 자진 신고제도<sup>12)</sup>

- (목적) 역외계좌 혹은 역외자산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납세자들의 자발적 세금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 (주요 내용)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를 통해 신고하지 못한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
  - FBAR은 미국 외의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이가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신고하는 제도
- (연혁) 3차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는 1차 OVDP, 2차 OVDI(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와 달리 적용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벌금(Penalty) 수준도 높아짐
  - ① 1차(OVDP) : 2009. 03. 23 ~ 2009. 10. 15 : 2003년부터 보유액이 가장 높은 해외 20%
  - ② 2차(OVDI) : 2011. 02. 08 ~ 2011. 09. 09 : 2003~2010년 중 보유액이 가장 높은 해외 25%

12) Internal Revenue Service, "2012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OVDP)"

## 10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③ 3차(OVDP) : 2012. 01. 09 ~ 진행중 : 2003~2010년 중 보유액이 가장 높은 해의 27.5%

- (처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1~10년의 징역과 10만~50만달러의 벌금이 구형
- (효과) 2012년 6월, IRS는 1, 2차(2009년, 2011년) 프로그램을 통해, 약 33,000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자발적 신고를 하였고, 50억달러 이상의 체납된 세금 및 벌금을 거두었다고 발표

### 다.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의 보고 의무 강화<sup>13)</sup>(2011, 2012)

- (주요 내용) IRS는 2011년부터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처리 사업자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의 연간 지불액(매출)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전자결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IRC 6050W)
  - 2012년부터는 가맹점이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하여 예비적 원천징수 실시(IRC 3406)

### 라. 국세청(IRS)과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의 금융정보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sup>14)</sup>(2010. 9)

- (주요 내용) 국세청(IRS)과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은 금융정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세청(IRS)의 준법감시자들(compliance employee)에게 의심거래정보(Suspicious Activity Reports, SARs)를 제공하도록 함
  - IRS의 준법감시자들은 예탁기관, 증권·선물산업, 카드클럽·카지노클럽의 의심거래보고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
  - FinCEN은 미 재무성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로 마약 등 범죄자금 세탁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
  - 의심거래정보는 금융범죄 및 테러자금 조달을 탐지하여 예방하기 위해 제공됨

13) 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Some Compliance Sub-Group" (2012. 1)

14) Internal Revenue Service, "Memorandum for Services and Enforcement Compliance Operating Division Commissioners and Small Business/Self-Employed Directors" (20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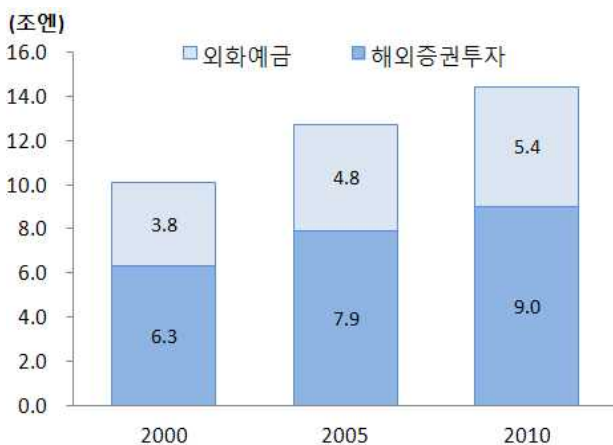
- (효과) 세무당국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보다 넓어져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조사가 보다 용이해짐

#### 4. 일본

##### 가. 국외 재산조사 제출제도(国外財産調書制度)<sup>15)</sup>(2014. 1)

- (배경) 일본은 지하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개인의 해외보유 자산 증가로 관련 소득 및 상속재산의 신고 누락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
  - 하마킨종합연구소의 연구(2001)에 따르면,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이유로 1990년대 이후로 감소<sup>16)</sup>
    -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법인과 개인의 직접세 부담이 경감되어, 탈세 유인이 감소한 점과 폭력, 매춘 등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점이 규모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
  - 최근 해외재산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림 1] 해외재산 보유액



자료: 財務省 “國際課税關係(国外財産調書制度の創設等の改正)”(2012. 3)

<표 2> 해외재산 신고 누락액

(단엔)

	2004	2009
소득세 조사에 의한 해외재산 소득 탈루액 (건당 소득액)	1,841	3,390
상속세 조사에 의한 해외재산 신고 누락액 (건당 재산액)	4,244	10,661

15) 國稅廳, “「國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のあらまし”(2013. 4)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hotei/kokugai\\_zaisan/pdf/01.pdf](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hotei/kokugai_zaisan/pdf/01.pdf))  
 16) 浜銀總合研究所(하마킨종합연구소), “わが國の地下經濟の規模を推計する”(2001. 5)

## 12 지하경제양성과 정책 해외동향

- (주요 내용)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외 보유재산(예금, 채권, 부동산 등) 총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에 대해, 국외 재산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제도
  -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 거주자들(비영주자 제외)은 매년 관할 세무서에 해외 재산 목록을 제출
    - 비영주자는 외국 국적을 소지한 거주자로 과거 10년 동안, 일본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을 의미
  -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부금, 서화, 골동품, 귀금속 등이 보고 대상
  - 매년 12월 31일까지의 해외 재산 보유현황을 기재하여,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출
    - 최초 시행: 2013년 해외재산 보유현황을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처벌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조서부터 적용
  - 조서에는 제출자의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소재 등을 기재
  
- (처벌) 국외 재산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자진 신고를 장려
  - 기재된 해외 재산에 대해 소득세·상속세의 신고 누락이 생겼을 경우, 국외 재산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5% 감액되지만, 국외 재산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가산세가 5% 가중
  - 국외 재산조서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

## 5. 영국

### 가. 국세청의 Closing in on tax evasion 발표<sup>17)</sup>(2012. 12)

- (목적) 개인 및 기업의 탈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
  
- (주요 내용) 탈세자에 대한 제재 강화, 탈세 고위험군 타겟팅 전략 시행
  - 탈세자 관리 및 제재 강화

17) HM Revenue & Customs, *Closing in on tax evasion* (2012. 12)

- ① ‘Managing Deliberate Defaulter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00여명의 탈세자에 대해 향후 5년간 납세에 관한 관리 · 감독을 시행함
- ② 2011~2012년 사이 400여건 이상의 탈세혐의에 대한 유죄판결(criminal convictions)을 통하여 직 · 간접적으로 10억파운드의 효과 달성(£1 billion of revenue benefit, either in losses prevented, or in payment of tax)
- ③ 해외 미신고 계좌소득 및 이익에 대해 적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대 200%까지의 벌금 (apply a penalty)을 부과
- 탈세 고위험군 타게팅 전략
  - ① 고위험 ·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역외 자산 파악을 통한 세금 추정
  - ② 지역 및 부문별 정보 연계강화로 탈세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자진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③ 해외 국가들과의 정보교류 강화
- 국세청의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sup>18)</sup>
  - 강화되는 탈세방지 계획에 대해서 홍보
  -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를 유도하며, 각 캠페인의 목표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

#### 나. 스위스와 역외탈세방지조약 체결<sup>19)</sup>(2011. 12)

- (배경) 스위스는 OECD 조세조약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2009년 발생한 UBS 사태 이후 유보적 입장을 철회하고 영국과 역외탈세방지조약을 체결<sup>20)</sup>
  - 스위스는 비밀금융주의와 국제적 조세정보교류 흐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금융계좌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대신 해당 국가 납세자의 세금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것으로 합의
- (목적)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스위스 은행의 무기명 계좌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 및 납세자의 자산 및 소득파악

18) HM Revenue & Custom (<http://www.hmrc.gov.uk/campaigns/news.htm>)

19) HM Revenue & Custom (<http://www.hmrc.gov.uk/taxtreaties/ukswiss-faqs.htm>)

20)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12.

## 14 지하경제양성과 정책 해외동향

- (주요 내용) 스위스 정부는 영국 납세자에 대한 원천징수, 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는 영국 정부에 자산을 신고하여 합법화 가능
  -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은행의 영국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 협약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영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

### 다.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 전략 대응 방안 마련(2012. 12)

- (목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방지
- (주요 내용) 국세청의 조세회피 추적 기능 강화 및 조세회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금지
  - 2012년 12월 스타벅스,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 법인세 차이를 이용하여 공격적 조세 회피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성 발생<sup>21)</sup>
    - 스타벅스의 경우 유럽총괄본사를 네덜란드에 설립하고 자회사로부터 지적 재산 로열티를 지급 받아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거나, 원료를 스위스법인에서 매입하여 원두 판매이익을 스위스 법인으로 이전하고, 이자세율이 낮은 국가의 관계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행위 등을 통하여 영국 내에서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행
  - 재무부는 국세청의 세금회피 추적 업무에 7,700만파운드를 배정하며, 세금 전문 부서 설립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다국적 법인과 개인들의 역외탈세 및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대응 강화<sup>22)</sup>
  - 영국정부는 조세회피 혐의가 있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한 다국적 기업들이 공공부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계획을 발표<sup>23)</sup>

21) BBC, "Google, Amazon, Starbucks: This rise of 'tax shaming'" (2012. 12. 4)

22) HM Treasury ([http://www.hm-treasury.gov.uk/press\\_129\\_12.htm](http://www.hm-treasury.gov.uk/press_129_12.htm))

HM Revenue & Customs, *Closing in on tax evasion* (2012. 12)

HM Treasury, *Finance Bill 2013 Explanatory Notes* (2013. 3)

23) HM Treasury ([http://www.hm-treasury.gov.uk/press\\_10\\_13.htm](http://www.hm-treasury.gov.uk/press_10_13.htm))

한국조세연구원, 「영국의 조세회피 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금지 방안」 (2013. 4. 5)

## 6. 호주

### 가. 벤치마크 제도(Small business benchmarks)의 도입<sup>24)</sup>(2009)

- (목적) 소규모 사업체들의 현금거래로 인한 탈세 방지 및 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
- (주요 내용) 소규모 사업체들의 사업실적을 유사한 사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사업비율(financial ratios of business income to business expenses - benchmarks ratio)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자는 납세 규모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
  - 소득세 및 Goods and Services Tax 정보를 통하여 총비용, 인건비, 차량비용, 임대료 등 각각에 대한 비용 대비 매출의 주요 사업비율을 공시
  - 공시된 사업비율을 통해 각 사업체들은 자신의 소득 및 지출의 일정 범위를 알 수 있으며,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거래를 누락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납세 대상 사업체들의 소득신고 내용이 사업비율에서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1차적으로 서신을 보내 오류를 수정하거나 자발적인 신고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어길 경우 조사에 착수
  -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공무원 파견을 통한 실시간 점검제도 시행
    - 영업활동과 납세 검증까지 시차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세무조사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
    - 장부기장 내역 확인, 조세와 관련된 비용과 수입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
- (효과) 2011년 잠재적 현금매출 누락자 4만 6천여명을 선정하였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 실시 및 해당 사업자 세무대리인의 소명을 요청<sup>25)</sup>

24) OECD, *Reducing opportunities for tax non-compliance in the underground economy* (2012. 1)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www.ato.gov.au/corporate/PrintFriendly.aspx?ms=corporate&doc=/content/00276623.htm>)

25) OECD, *Reducing opportunities for tax non-compliance in the underground economy* (2012.1)

### 나. 납세순응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2012-2013의 발표<sup>26)</sup>

- (목적) 2002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세무사,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하여 각 그룹이 준수해야 하는 조세정책과 주요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sup>27)</sup>
  
- (주요 내용)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명확한 소득, 매출 신고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할 세제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부정확한 소득신고 및 매출 신고에 대해 중점을 두어 조사를 한다는 것을 명시
  -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정보 수집을 통하여 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
  - 특히 기업들의 Goods and Services Tax 회피 및 탈세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명시
  
- (효과) 2011-12 회계연도 동안 2,147건의 탈세자를 적발하고 741만달러의 세금을 추징<sup>28)</sup>

## III 시사점

- 급증하는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적 세수확보방안으로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해외국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하경제는 합법적 부문 및 불합법적 부문과 금전거래 및 비금전거래 등 매우 상이한 부문과 거래유형들이 혼재되어 있는 개념이므로, 그 실체나 규모의 파악이 힘든 부문이 있음
  -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사채동결 조치, 금융실명제 실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을 들 수 있음

26) Australian Taxation Office, *Compliance program 2012-13* (2012. 1)

27)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www.ato.gov.au/content/53764.htm>)

28)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www.ato.gov.au/corporate/content.aspx?doc=/content/00134154.htm&pc=001/001/008/016/001&mnu=52244&mfp=001&st=&cy=>)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방식하에서 대략 GDP의 15~25%로 추정되며,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남유럽국가들과 유사하게 높은 편에 속함
  - 일본은 폭력 및 매춘 등 불법경제활동에 대한 대대적 규제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기점을 마련한 바, 온라인 불법도박, 사채양성화 등 불법 활동의 영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부터 과표양성화까지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의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적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국가들은 주로 높은 실업률과 자영업자 비중, 낮은 납세의식, 납세당국의 징수노력 부진, 금융정보의 연계성 부진, 금융자산 및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회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해외국가들에서는 과세당국의 징수능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는 다양한 조치와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치, 금융정보 및 업무의 연계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거래 및 경제활동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과표양성화 노력이 필요
- 국제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탈세 및 역외금융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역외탈세에 국제적 정보공유 트렌드에 발맞추어 정보공유의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작성자 :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02-2186-2288)

## 18 지하경제양성과 정책 해외동향

